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99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3월 7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2019년 상반기 연구단체 운영 일정과 본 개정안 심사·의결 시기를 고려할 때 개정 내용을 즉시 시행할 경우 연구단체 구성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연구단체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활동하도록 경과조치함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기타사항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단체 구성요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연구단체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부 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부 칙</p>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제2조(연구단체 구성요건에 관한 경과 조치)</u>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연구단체는 <u>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</u> 구성되어 <u>활동하는 것으로 본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0명 이상” 을 “10명 이상 20명 이하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단체 구성요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연구단체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.